

대통령령 제 호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선불충전
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
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(이하 “소액후불결제”라 한다)

제2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8의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

제2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업자(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
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에 한한다)

제3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의2. 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

제32조제2항 중 “구성 및 운영”을 “구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①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1의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(이하 “소액후불결제”라 한다)
2. ~ 7. (생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”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8의2. 「전자금융거래법」
9. ~ 13. (생략)	9. ~ 13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
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⑥ ~ ⑪ (생략)

제3조(금융상품의 유형) ① (생략)

② 법 제3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~ 4. (생략)

③ · ④ (생략)

제32조(조정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

⑤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업자(같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자에 한한다)

⑥ ~ ⑪ (현행과 같음)

제3조(금융상품의 유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조정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구성 -----

장이 정한다.
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00 - 2524